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26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제2200026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절차 추가 (안 제4조제2항)	3
나. 수도권 대규모개발사업 시 인구집중 방지 방안의 전문기관 수립 대행 등(안 제19조제4항 신설 등)	7

I.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제2200026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정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5. 30.

다. 회 부 일 : 2024. 6.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정비계획안 결정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정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의견이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외에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 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심의 요청 시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및 인구집중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교통문제와 환경오염 문제의 방지방안은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집중 문제는 별도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수립 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석에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효과 및 인구집중 저감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3. 검토의견

가.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절차 추가 (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 -----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하거나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¹⁾을 수립·변경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까지 거치도록 하는 내용임.

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 계획안 입안 → 국토계획평가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지방자치법」 제186조²⁾ 및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월에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함)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³⁾을 심의하는 기구로, 대통령·국무총리 등 중앙정부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됨.⁴⁾

개정안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는 수도권정비계획⁵⁾이 비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협력

2) 「지방자치법」

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협력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된다.

③ 협력회의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이하 “시·도지사협의회장”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圈域)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비수도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현재도 수도권정비계획안 입안 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있고(법 제4조제1항6), 수도권정비위원회 상정 전에 거치는⁷⁾ 국토계획평가에서 균형적 국토발전을 기준의 하나로⁸⁾ 하고 있으며, 목적과 기능이 다른 협력회의에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비효율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협력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정비계획안을

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7) 「국토기본법」

제19조의2(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 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

구분	국토계획평가 대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
1. 종합계획·지역 계획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8)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①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적 국토발전

수립·변경하는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계획 수립 시 비수도권의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함께 심의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나. 수도권 대규모개발사업 시 인구집중 방지 방안의 전문기관
수립 대행 등(안 제19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교통 문제 및 환경 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르고,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 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저감방 안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따른다.
<신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 한 방안의 수립을 인구유발효과 분 석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단 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 하기 위한 방안에는 지역별·개발사 업 유형별 특성과 취업, 신규 주택 공급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인구 이동의 효과 및 인구집중 저감방안 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도권 대규모개발사업의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하 “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이라 함)의 수립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단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방안에는 지역별·개발사업 유형별 특성과 취업, 신규 주택공급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효과 및 인구집중 저감방안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⁹⁾을 시행하거나 그

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란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결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이하 “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이하 “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 조성사업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
 - 다. 「온천법」에 따른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계획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 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을 수립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현행법 제19조¹⁰⁾), 이때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에 대한 인구 증감·이동 분석¹¹⁾과 경제적·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및 인구집중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 인구유발효과의 분석방법은 국토교통부고시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의안의 작성 및 심의요청) ② 의안은 별표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경우 별표2에 따른 인구유발효과 분석 결과를 의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2] 인구유발효과 분석

□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유발효과

○ 직접적 파급효과

- 당해사업이 직접적·1차적으로 인구의 증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로서 주가 되는 시설의 인구수를 기술

예) 택지개발지구의 주택건설용지 인구수,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취업인구 등(업종별 고용원단위 등 산출)

○ 간접적 파급효과

- 주가 되는 시설 이외에 부수적으로 입지되는 시설의 인구수를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세부 시설별 고용원단위 등을 산출하여 기술

예) 택지개발지구의 자족지원·공공시설용지 등의 취업 인구수, 산업단지의 지원·공공시설용지 등의 취업 인구수 등

○ 인구의 사회적 이동

- 사업으로 인한 수도권 내 권역 간 인구 이동 및 비수도권에서의 수도권으로의 유입인구 등을 기술
- 분석방법으로는 고용이동 O-D표를 이용한 취업자 이동 모형을 적용

※ 취업자이동 모형

$$HM_1 = FM$$

$$HM_2 = HM_1 - HM_1 \times RNF - HM_1 \times RNU - HM_1 \times RIM$$

$$HM_3 = HM_2 - HM_2 \times RNF - HM_2 \times RNU - HM_2 \times RIM$$

·

$$HM_n = HM_{n-1} - HM_{n-1} \times RNF - HM_{n-1} \times RNU - HM_{n-1} \times RIM$$

$$HM_n = FM - (RNF + RNU + RIM) \sum HM_i$$

$$\sum HM_n = (1 - (RNF + RNU + RIM)) \sum HM_i$$

여기서, - FM = 사업지구로의 최초 이입 취업자수

- HM_i = i단계 취업자 이동의 「취업기회여분」

- RNF = 권역내에서 신규 취업자 발생율

- RNU = 권역내에서 실업자 발생율

- RIM = 권역밖으로부터 취업자 이동율

□ 인구집중 억제에 위한 대안 및 그 저감방안

○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인구집중 억제 방안 등 기술(공장 등의 관내 재배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인구집중 저감방안을 제출함(현행법 시행령 제25조의2¹²⁾).

과거에는 수도권 대규모개발사업 시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인¹³⁾ 인구영향평가를 토대로 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을 수립하였는데,¹⁴⁾ 감사원이 2005년 10월에 대안의 실효성 미흡과 안전 작성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인구영향평가 제도의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2009. 1. 전부개정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후 수도권 대규모개발사업

유도, 지역인재 유치 등)

1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5조의2(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석할 것
 - 가.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입지하는 주요 시설 및 부수적 시설로 인한 거주인구, 취업인구 등 인구의 증감
 - 나.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도권 내 인구의 이동 및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간의 인구의 이동
2. 제1호에 따라 분석된 인구유발효과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인구집중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

13)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향평가”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한다.
 - 가.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 나. 교통영향평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애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 다. 재해영향평가: 사업이 홍수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 라. 인구영향평가: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14) 구 「수도권정비계획법」(2011.5.19. 법률 제106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② 제1항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인구집중 문제,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제심의 시 인구유발효과 분석이 활용되고 있음.¹⁵⁾¹⁶⁾

그러나, 현행 인구유발효과 분석은 택지조성, 도시개발, 공업용지 조성, 관광지 조성 등 각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수도권의 각 지역에 따라 비수도권 인구의 유입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며, 신규 주택공급 등으로 인한 인구이동 효과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¹⁷⁾ 인구유발효과 분석 결과가 같은 시기의 산업단지계획 심의 시 상근인구 규모 추정치의 1/4에 불과한 등 분석의 전문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주장¹⁸⁾이 제기된 바 있음.

개정안은 지역별·개발사업 유형별 특성과 신규 주택공급 등 요인을 반영하여 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을 수립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기관이 동 방안의 수립을 대행할¹⁹⁾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도권정비위

15)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구유발효과의 분석방법에 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2]는 인구영향평가서 기술항목 중 각종 영향평가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여 사업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것임.

16) 구법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와 현행법상 인구유발효과 분석의 비교는 [참고 1] 참조.

17) 「개발사업에 따른 수도권 인구유발효과 분석 연구」(국토교통부 연구용역), 국토연구원, 2016, 65면 참조.

18) 2018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회의록(2018. 10. 10.) 114면 참조.

19)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인구영향평가는 등록된 영향평가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영향평가의 대행) ①사업자는 평가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결과(이하 “평가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원회 심의 시 제공되는 분석 및 대안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2022년부터 국토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소위원회²⁰⁾를 통하여 인구유발효과 분석 결과를 검증²¹⁾하고 있고, 인구유발효과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어 법률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에 신중한 입장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74

20)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실무소위원회) 실무소위원회는 제3조(의안의 사전검토)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의 입지적 정성 및 인구유발효과 등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실무위원 및 전문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1)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개발사업 유형을 반영한 취업 이동, 기초지자체 단위의 인구 이동, 택지조성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발생하는 주거인구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구유발효과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함.

참고 1

인구유발효과 분석과 인구영향평가 간 비교

구 분	인구유발효과 분석	인구영향평가
근 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실 시	'09.1.	'82.12.
대상사업	택지조성(100만㎡이상) 공업용지(30만㎡이상) 관광지조성(10만㎡이상) 등	<좌동>
평가시기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	실시계획 승인 전
협의절차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 요청 전 협의 가능	초안·본안 협의 필요
작성자 및 작성방법	심의 제안자(정부부처, 지자체) * 통상 엔지니어링 사업체에 의뢰하여 작성 중 (외부용역 의무 없음)	외부전문업체에 용역의뢰(의무) * 국·공립연구·출연기관, 엔지니어링산업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업체 등
작성내용 (형식)	위원회 운영규정(별표2)에 따라 인구유발효과 분석 <인구유발효과 분석> - 직접적 파급효과 - 간접적 파급효과 - 인구의 사회적 이동분석 - 인구집중 억제에 위한 대안 및 그 저감방안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인구 및 사회·경제 현황 4. 인구영향의 예측 및 기술 5. 관련계획 및 토지이용 검토 6. 기반시설 공급방안 검토 7. 인구집중억제를 위한 대안 8. 종합평가
상정 절차	별도 절차 없음	초안작성→관계기관 협의→ 공람 (20일)·주민설명회 → 본안협의 (국토부, 지자체) → 수도권 심의상정 : 최장 45일 소요

※ 자료: 국토교통부